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3
------	------

2020. 11. 23.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8월 12일, 최선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20.11.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최선 의원)

1. 제안이유

-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예산의 전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입 취지가 제도 내에서 잘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성인지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의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계획 수립, 예산서·결산서 분석, 운영협의체 구성,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 성인지 예산 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등 성평등한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¹⁾.
 - 성인지 예산 제도는 1995년 북경 세계 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는 2010년부터 국가예산에 우선 도입되었고(2006년 「국가재정법」 개정),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었음(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2000), 지방예산실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8면.

○ 서울시의 2020년 성인지 예산 규모는 333개 사업·3조 250억원으로 2013년(60개·2,722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사업 중 성인지 대상사업의 비중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다만, 2021년에는 성주류화 확산과 성인지예산 공감대 확대를 위해 예산서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전년대비 사업수는 2개 감소하였으나, 예산은 5,553억원 증가하였음.

<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안)	연평균 증가률
대상 사업 수	총계 (A)	2,925	2,991	3,397	3,724	3,860	3,843	4,002	4,024	4,020	4.7
	성인지(B)	60	92	131	232	270	272	373	333	331	27.7
	비중(B/A)	2.1	3.1	3.9	6.2	7.0	7.1	9.3	8.3	8.2	21.7
예산 규모	총계 (C)	235,069	244,133	255,184	275,038	298,011	338,670	387,814	419,845	400,385	8.6
	성인지(D)	2,722	4,059	7,855	12,876	18,470	22,342	29,089	30,250	35,803	41.1
	비중(D/C)	1.2	1.7	3.1	4.7	6.2	6.5	7.5	7.2	8.9	29.2

※ '18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 대상회계에 기금이 포함되어 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추진사업(여성정책담당관)²⁾, 「성별영향평가법」상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여성정책담당관)³⁾,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예산담당관)으로 구성됨.

2)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 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구 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내 용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 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장의 공약 및 주력 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선정방법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과제별 대상사업 선정	차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사업 및 이전부터 계속된 예산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선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완하여 성격차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 선정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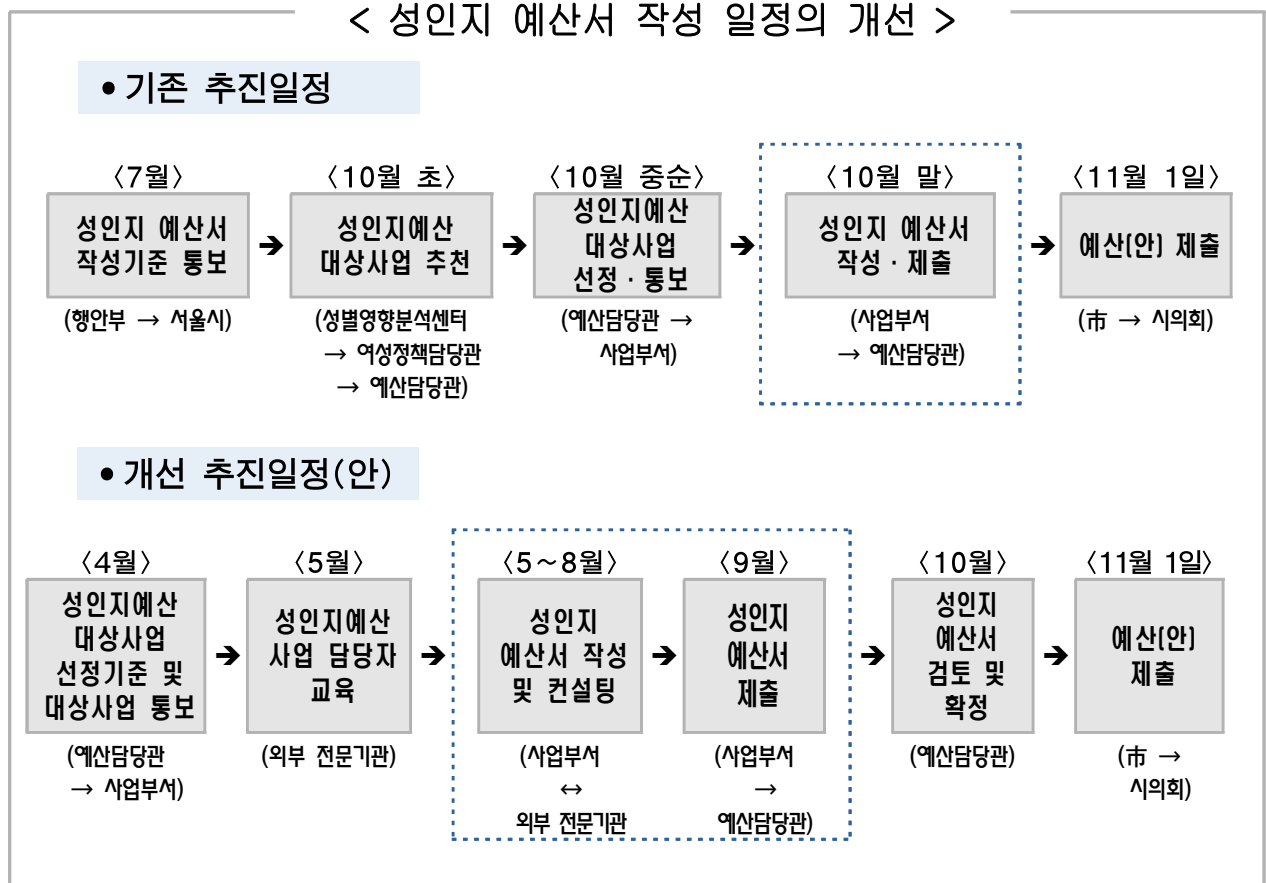
-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대상 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부서 의견 수렴, 대상사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한 결과, 서울시 특화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

< 연도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대상사업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계	사업수	333 (100.0)	373 (100.0)	272 (100.0)	269 (100.0)	236 (100.0)	131 (100.0)	92 (100.0)	60 (100.0)
	예산	3,025,020 (100.0)	2,908,919 (100.0)	2,234,256 (100.0)	1,846,842 (100.0)	1,287,594 (100.0)	785,456 (100.0)	405,881 (100.0)	272,186 (100.0)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사업수	38 (11.4)	201 (53.9)	102 (37.5)	105 (39.0)	137 (58.1)	55 (42.0)	35 (38.0)	37 (61.7)
	예산	789,551 (26.1)	1,935,244 (66.5)	1,543,549 (69.1)	1,177,080 (63.7)	967,747 (75.2)	384,334 (48.9)	154,082 (38.0)	162,178 (59.6)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	사업수	140 (42.0)	86 (23.1)	84 (30.9)	79 (29.4)	61 (25.8)	52 (39.7)	30 (32.6)	23 (38.3)
	예산	348,828 (11.5)	143,049 (4.9)	378,509 (16.9)	507,703 (27.5)	265,531 (20.6)	316,164 (40.3)	155,964 (38.4)	110,008 (40.4)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업수	155 (46.5)	86 (23.1)	86 (31.6)	85 (31.6)	38 (16.1)	24 (18.3)	27 (29.3)	-
	예산	1,886,641 (62.4)	830,626 (28.6)	312,198 (14.0)	162,059 (8.8)	54,316 (4.2)	84,959 (10.8)	95,835 (23.6)	-

- 또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시기 조정(10월 중순→4월), 성인지 예산 가이드 개발, 전문교육 실시, 컨설팅 제공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1) 총론(안 제1조~안 제3조)

- 안 제2조는 “성인지 예산제”,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 “성인지 예산제”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큰 차이가 없으며⁴⁾, “성인지 예산서”(제2호)와 “성인지 결산서”(제3호)는 「지방재정법」⁵⁾과 「지방회계법」⁶⁾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였음.

- “성인지 감수성”(제4호, Gender Sensitivity)⁷⁾은 법적 정의가 없어 독자적인

4) 「2021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 작성 기준」(행정안전부)·「2021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 등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5)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7) Gender Sensitivity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으로 언급이 되면서 널리 알려졌으나, 학술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해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력, 성별감수성, 성인지성, 젠더감수성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음. 다만, 공통적으로 신체, 심리, 사회적 영역에서 양성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이런 이슈를 감지하거나 소통하는 능력 또는 태도로 인식되고 있음(곽연희, “청소년의 피해대경험과 성인지감수성의 관계 : 거부민감성과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7면~9면)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하는 능력’이란 일반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양성평등의 목표설정부터 결산평가까지 성인지 예산 관련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제1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제2항),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특정 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 배분의 모든 과정임을 고려할 때 성인지 예산의 편성·집행부터 결산·환류에 이르는 모든 예산 과정에 제1항과 같이 시장의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⁸⁾
- 제2항의 공무원 교육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며, 안 제16조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제3항은 우리사회 전반의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적

8)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이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는 만큼 시장의 책무 범위를 성인지 예산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와 재원 마련의 책무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2) 운영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안 제6조)

- 안 제4조는 성인지 예산 편성 전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 방향, ▶ 주민 참여 및 홍보, ▶ 교육계획, ▶ 집행실적 평가 등이 운영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 성인지 예산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통보(7.31)한 기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데, 이때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자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있음.
- 이처럼 행정안전부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을 통보하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별도의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는 예산 총괄(예산담당관)을 비롯해 양성평등사업(여성정책담당관), 결산(재무과) 등의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담당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양성평등정책계획과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 제와 연계될 수 있는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와 대상사업 선정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서의 활용도·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보완토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성인지 예산은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자체계획에 따른 사업, ▶ 「성별 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대상 예산사업,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대상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의 수립이 필요함.
- 서울시는 2020년부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활용 중이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형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지침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5조는 서울시의 체크리스트와 여성가족재단의 매뉴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활용도의 점검과 운영협의체의 자문을 실시토록 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토록 규정한 것으로, 성인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토록 개선해야 할 것임.

(3)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체(안 제7조~안 제15조)

-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체를 두도록 하면서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운영협의체는 ▶ 지침서, ▶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평가·환류,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성인지예산서 연구 분석 및 권고 등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함(안 제7조).
-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규정하며 위촉 위원이 전체의 1/3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음(안 제8조).
 - 당연직 위원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여성정책담당관),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장(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본부장)임.

- 위촉직 위원은 서울시의원, 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추천인, 사회단체의 추천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담당관 등 여러 부서의 업무가 연계되어 운영 되는 만큼 협의체와 같은 의견 조율과 의사 결정을 위한 기구가 필요함.
- 특히,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환류와 함께 예산의 편성·집행과 결산 간에 유기적인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는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과 조사 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에 협의체 운영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자문기구인 협의체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 밖에,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중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선정된다는 점에서⁹⁾ 대상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보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9) 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확정되며, 성별 영향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선정됨.

< 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

구분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조정 대상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 5. 성인지 예산 6.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영 계획서의 연계 5.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
위원 구성	40명 이내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15명 이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 연 직	·시장(위원장)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부위원장)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10명 이내	·성평등 정책·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기관장
위 촉 직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성단체 및 법인의 추천자

-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운영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해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두고,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무협의체는 운영협의체의 위임 사항과 위원장의 지정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고, 실무협의체의 자문을 운영협의체의 자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나, 운영협의체와 역할 수행에 혼선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종적인 자문과 심의는 운영협의체에서 담당하도록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위원 임기(안 제9조), 위촉 해제(안 제10조), 위원장 직무(안 제11조), 회의(안 제12조), 수당(안 제15조) 등은 협의기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임.

(4) 교육과정 운영 등 실효성 제고 방안(안 제16조~안 제19조)

- 안 제16조는 협의체 위원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규정해 현재 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협의체 위원까지 확대시켜 성인지 예산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협의체 위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
- 안 제17조는 성인지 예·결산에 시민의견을 받고 이를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운영계획 내용에 포함된 주민참여와 홍보(안 제4조 제2항 제2호)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8조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전략과 정책이 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 활동전략의 수립→성과지표 개발→예산액→성평등 기대 효과→성별수혜 분석 등이 계층적으로 연계되는 유기적 성과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안 제19조는 성인지 예산제 업무 중 지침서 및 지침 마련(안 제5조),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안 제6조), 교육과정 운영(안 제16조)을 전문성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지침서 작성과 교육과정 운영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안 제19조에 근거해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성인지 예산제의 전문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제는 2013년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2020년도부터는 형식적인 운영에서 탈피해 대상사업 선정 절차의 체계화, 품질 제고를 위한 일정의 조정,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성인지 예산의 특성상 여러 부서와 기관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음.
-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서 작성, 교육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입법화해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의 수립, 서울시의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등의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는 유효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됨.
- 다만, 서울시에서 성인지 예산제 대상 사업의 담당자를 위한 교육·컨설팅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과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의 전담 부서 지정, 일부 자구 수정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체 운영기관의 지정을 규정하며,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양성평등’ 을 ‘성평등’ 으로 수정함(안 제1조).
- ‘동등’ 을 ‘공평’ 등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함(안 제2조).
- 책무범위를 ‘양성평등정책 수립’ 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 으로 수정함(안 제3조).
- 컨설팅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33
----------	---------

제안년월일 : 2020년 11월 2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체 운영기관의 지정을 규정하며,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양성평등’ 을 ‘성평등’ 으로 함(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
- ‘동등’ 을 ‘공평’ 등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함(안 제2조).
- 책무범위를 ‘양성평등정책 수립’ 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 으로 수정함(안 제3조).
- 컨설팅 사업과 필요비용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
-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양성평등” 을 “성평등” 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동등” 을 “공평” 으로, 제2호 중 “예산이” 를 “예산서로서” 로, 제4호 중 “하는 데” 를 “하는데” 로 하며, 안 제2조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인지 결산서” 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결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양성평등” 을 “성평등” 으로, 제3항 중 “양성평등정책을 수립” 을 “성인지 예산을 편성” 으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양성등정책” 을 “성평등정책” 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① 시장은” 을 “시장은” 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②정기” 를 “② 정기” 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협의체 운영기관 등) ①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결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침서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5조(지침서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 ④ (제정안과 같음)</p>
<p>제10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1. ~ 6. (제정안과 같음)</p>
<p>제12조(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6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협의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협의회 운영기관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결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침서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대상사업 선정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시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장
5.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성인지 예산제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체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자문은 협의체의 자문으로 본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민 참여) 서울특별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관리 체계 구축)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체 운영기관 등) ①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